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3년 9월 1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낙하리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배제되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주민대표 모두가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중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주민중 파주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추천한 각 2인”과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인“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6인 이내“로 통합함.(안 제23조제1항제2호)

3. 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요건을 현행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주민지원협의체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의회 의원과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그리고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지원협의체위원 구성현황(9)

- 시의회의원(1), 지역주민대표(6), 관계전문가(2)

-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역의 시의회 의원, 지역주민중 파주시의회의장과 시장이 추천한 각 2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한 2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한 2인에 의하여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게 불필요하게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위원추천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어왔음.

○ 또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구성에서도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역(탄현면 낙하리) 주민대표의 추천권을 배제한 채 인접지역(문산읍 내포리)주민대표가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추천했다는 주민지원협의체 내부의 불만과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임.

○ 향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수를 9인으로 구성하되 소재지역 의회 의원 1명외에 주민대표 6명은 탄현면 지역과 문산읍지역 주민대표를 각각 3인으로 하고 추천된 6명의 주민대표가 관계전문가 2인을 공동으로 추천하여 위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수를 폐기물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이 300톤 미만인 경우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수를 현행과 같이 9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위원구성도 전체위원 중 주민대표가 6인으로 위원수의 과반수가 주민대표로 구성토록 한 규정에도 부합되고 있음

- 그러나 동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개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개정요인이 없음에도 당초 조례 제정 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요건을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게 정함으로서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고 또한 위원구성에 따른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되어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된 경우인 만큼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업무처리와 관계 공무원들의 주의촉구가 요구됨.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구성 현황〉

- 구성일자 : 2003. 5. 1(임기2년)
- 구성내역 : 9인
- 소재지 의회의원 : 1명 (신증균 의원)
 - 소재지 주민대표 : 4명 (낙하리 주민대표)
 - 인접지 주민대표 : 2인 (내포리 주민대표)
 - 관계 전문가 : 2명 (신홍대 교수)